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환경부 (생물다양성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야생동물 질병예찰, 진단·분석, 조사·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,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8. . ~ 9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(이하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”)”을 “과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(이하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 중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”을 각각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”으로 한다.

제4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”을 각각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”으로 한다.

제44조의8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”을 각각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0호의4서식 중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”을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”으로 하고,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”을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0호의5서식 직인란 중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”을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5(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의 지정 등) ① 법 제34조의7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 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 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(이하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”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 ③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</u> <u>장은</u>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 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 게 발급해야 한다.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 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 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</u>	제44조의5(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과 영 제23조의 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 리원장(이하 “국립야생동물질 병관리원장”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

장_____ .

⑤ _____

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____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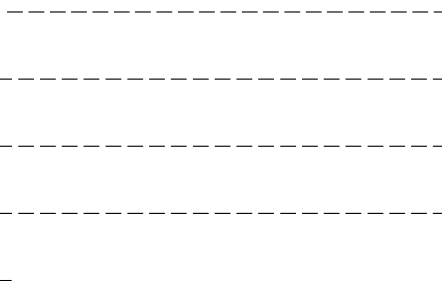
_____. _____ 국립야생동물

질병관리원장_____

_____.

제44조의7(역학조사) ① -----

----- 국립야생동
물질병관리원장-----
-----.

1. 
2. 
3. 

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생
동물 질병에 대하여 해당 시
·도의 기술·장비 및 전문성
의 부족으로 시·도지사가 역
학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
경우

② (생략)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역
학조사를 요청받거나 법 제34조
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
역학조사를 하려는 국립야생동
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·도
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
포함한 역학조사반을 지체 없이
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한
다.

1.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또는
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
하는 공무원
2. 야생동물 관련 치료기관, 연
구기관 등에서 야생동물 질병
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
한 경험이 있는 사람
3.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
경험이 있는 사람

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국립야생동
물질병관리원장 -----

--.

1. -----

2. -----

3. -----

④ (생 략)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 조사를 한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</u> 또는 시·도지사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역학조사를 요청한 시·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⑥ (생 략) 제44조의8(예방접종·격리·출입 제한·이동제한·살처분 명령) ① ~ ⑤ (생 략) ⑥ 법 제34조의10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</u>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2.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</u>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⑦·⑧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 제44조의8(예방접종·격리·출입 제한·이동제한·살처분 명령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</u> -- ----- ----- 2.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</u> -- ----- ----- ----- ⑦·⑧ (현행과 같음)
--	--